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 무 총 리 정 세 군

**국 무 위 원
고 용 노 동 부 관 이 재 갑**

● 법률 제17187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의 제목 중 “등의”를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누구든지 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54조제8호 중 “제153조”를 “제1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장에 제1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

제167조제1항 중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8조제1호 중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제51조, 제54조제1항”을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157조제3항”을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3조제3항, 제55조제1항”을 “제53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9조제1호 중 “제63조”를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140조제1항”을 “제140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3조제

1항”을 “제53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131조제1항”을 “제131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0조제1호 중 “제41조제3항”을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6조제3항”을 “제56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57조제1항”을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한 사람
8. 제1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제1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0조의2(벌칙) 제174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1조제1호 중 “제138조제1항·제2항”을 “제138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으로 한다.

제174조제1항 본문 중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수강명령”을 “수강명령 또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수강명령”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수강명령”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강명령”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수강명령”을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 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제175조제2항제1호 중 “제29조제3항”을 “제29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4조제2항”을 “제54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57조제3항”을 “제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15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29조제1항·제2항”을 “제29조제1항·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53조제2항”을 “제53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제155조제3항”을 “제155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40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114조제3항”을 “제114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제155조제1항”을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제156조제1항”을 “제156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6조의2, 제167조제1항,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71조제1호, 제174조제1항 본문(제166조의2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7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알선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증의 대여·알선 등을 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등록증의 대여·알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제153조제2항 및 제170조제7호·제8호 신설).
- 나.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해서는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의 조항을 적용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제166조의2 신설).
- 다.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등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함(제170조의2 신설).

라.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하도록 함(제174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 **법률 제17188호**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숙련기술자 중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자신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전수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그 숙련기술이 산업현장 등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1. 제3조에 따라 수립된 숙련기술 장려 정책에 관한 정보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하고 있는 숙련기술자에 관한 정보
- 3. 그 밖에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숙련기술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를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부는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기간 내에서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의 중단에 관한 처분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